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5
----------	---------

제출연월일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담배꽂초, 휴지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신고꾼(일명 “쓰파라치”)들의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포상금은 현금이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함. (안제26조의2제2항)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
(안 제26조의2 제4항 신설)
-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함. (안 별표7)

■ 개정근거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금액 조정 통보(경상남도 환경정책과-2785, 2005.02.16)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경상남도 환경정책과 -2655, 2005.02.15)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2005.2.11 환경부예규 제257호)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한한다.”를 “한하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포상금은 현금이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④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22조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한다.

제23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4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p> <p>① (생략)</p> <p>1. 유원지(<u>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p> <p>① (생략)</p> <p>② <u>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u></p> <p>③ <u>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포상금은 현금이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u></p> <p>③ ----- ----- <u>한하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u></p> <p>④ <u>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u></p>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관리법	1.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 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m ³)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m ³) 이상 75톤(50m ³)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 (50m ³)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 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300	500	7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다목(2) (나) ④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100이하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3항)	100이하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³)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³)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 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이하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100	100	1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300 이하	300	3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무단소각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군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	20이하	30이하	5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5.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7]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별표7]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생략” 1의2 “신설”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 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 2항) 가. “신설” 나. “신설” 3의2 “신설” 4. “생략” 가. ~ 나. “생략”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 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 장 여부를 확인하지 아 니하거나 작성대상자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 자에게 알려주지 아니 하는 경우 라. ~ 자. “생략”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 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 항 및 제2항) 가. ~ 라. “생략” 마. “신설” 6. “생략”	300	500	700	300	500	700	300	500	700
폐기물 관리법	1. “현행과 같음”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 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 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 항)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 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 호 제외)) 가. ~ 나. “삭제”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 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 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 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 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3항) 4.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라. ~ 자.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 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 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 6. “현행과 같음”	500	700	1,000	100 이하	100	100	300	500	700
								500	700	1,000
								100 이하	100	100
								1,000	1,0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폐기물관리법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가. “신설”	1,000 이하	1,000	1,000	폐기물관리법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0 이하	1,000	1,000
	나. “신설”					300	300	300	
	다. “신설”					1,000	1,000	1,000	
	라. “신설”					100	100	100	
	마. “신설”					100	100	100	
	7의2 “신설”					100	200	300	
	7의3 “신설”					100	200	300	
	7의4 “신설”					100	200	300	
	7의5 “신설”					10	20	50	

현행					개정안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생략”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폐기물관리법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현행과 같음”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삭제” (2) “삭제” (3) “삭제”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100	2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폐기물관리법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300	300	300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가. “생략”	5	5	5		가. “현행과 같음”	3	3	3
	나. ~ 라. “생략”					나. ~라. “현행과 같음”			
	마. “생략”	500	500	500		마. “현행과 같음”	50	50	5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00	1,000	1,000			100	100	1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5. ~ 20. “생략”					15. ~ 20. “현행과 같음”			
21. “생략”	30	50	100	21. “현행과 같음”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가. ~ 라. “생략”					가. ~ 라. “삭제”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가. ~ 자. “생략”					가. ~ 자. “삭제”			
	4. “신설”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	70	100		5. 비용을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	30	50	1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신설” 나. “신설”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활용구조개선대상사업자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200 150	250 200	300 300
7. “신설”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8. “신설”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0조제2항)	30	50	100		
9. “신설”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 16
----------	----------

제출일자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산세 납부 기간을 변경함.(안 제28조)
 - 종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개정 : 토 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주 택⇒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 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함.(안 제29조)
-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함. (안 제72조 내지 제83조)

□ 개정근거

-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7332호, 2005. 1. 5공포)
- 행정자치부 세제과-86(2005. 1. 14)
- 경상남도 세정과-494(2005. 1. 18)호의 표준안에 의함.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4조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31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각호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며,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4조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중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제1항제1호의 [표] 영업용 및 비영업용 배기량중 “1,500cc이하”를 각각 “1,600cc이하”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8절(제72조 내지 제83조)을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7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제1항 및 동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5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로 한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동조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23조의1제1항중 “국세기본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소득세법 ”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소득세법 ”을 “ 「소득세법」 ”으로 하며, 제38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으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으로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을 “ 「건설기계관리법」 ”으로 하고, 제41조의1중 “교통세법 ”을 “ 「교통세법」 ”으로 하며, 제41조의3제1항제1호중 “교통세법 ”을 “ 「교통세법」 ”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교통세법”을 “ 「교통세법」 ”으로, “관세법 ”을 “ 「관세법」 ”으로 하고, 제42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 ”을 “ 「농업·농촌기본법」 ”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42조 내지 제52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귀속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u>건축물</u>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u>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u> 에게 부과한다. ②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u>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u> 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td style="padding: 2px 5px;">1,2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1,000분의 3</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2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3만6천원+1,200만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6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6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5만6천원+1,600만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2,2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10</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2,2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11만6천원+2,200만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3,0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30</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3,0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36만6천원+3,000만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4,0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50</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4,0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나.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p>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토지</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종합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td style="padding: 2px 5px;">5,000만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1,000분의 2</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5,000만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10만원+5,000만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억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억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나. 별도합산과세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left;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td style="padding: 2px 5px;">2억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1,000분의 2</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2억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40만원+2억원</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0억원이하</td><td style="padding: 2px 5px;">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10억원초과</td><td style="padding: 2px 5px;">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 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40</p> <p>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 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none;"><u><과세표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none;"><u><세율></u></td> </tr> <tr> <td style="border: none;">4,000만원이하</td> <td style="border: none;">1,000분의 1.5</td> </tr> <tr> <td style="border: none;">4,000만원초과</td> <td style="border: none;">6만원+4,000만원</td> </tr> <tr> <td style="border: none;">1억원이하</td> <td style="border: none;">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style="border: none;">1억원초과</td> <td style="border: none;">24만원+1억원</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32조(----- 부동산-----)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p>②-----부동산----- -----100분의 75-----.</p>
<p>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6. 토지·건축물 및 주택 -----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18원</td> <td>800cc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cc이하</td> <td>18원</td> <td>1,000cc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cc이하</td> <td>19원</td> <td>1,500cc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cc이하</td> <td>19원</td> <td>2,000cc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cc초과</td> <td>24원</td> <td>2,000cc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41조의2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p> <p>②(생략)</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6조(세율) ① ~ 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p>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p> <p>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영업용</th> <th colspan="2">비영업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00cc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600cc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의2 (세율) ①----- ----- 1,000분의 215----- -----.</p> <p>②(현행과 같음)</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p> <p>제56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 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종합토지세</p> <p>제72조 내지 제8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u></p>
<p>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p> <p>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p>	<p><삭 제></p> <p><삭 제></p> <p>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8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생략)</p> <p>5. (생략)</p>	<p>제8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u>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u>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u>토지 또는 건축물</u>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u>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u>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p> <p>②----- ----- -----<u>재산세과세대장</u>----- -----.</p> <p>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p> <p>②-----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기준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 축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6월 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7월 16일 ~ 7월 3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 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6월 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p>	<p>제92조(세율) -----1,000분의 1.5-----.</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u>재산세 및 종합토지세</u>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u>재산세</u>----- ----- -----<u>재산세</u>----- -----.</p>
<p>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u>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u>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u> 2. <u>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u>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 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 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② (생략) ③납세의무자가 <u>법 제192조</u>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p>	<p>제94조(신고의무) ①----- -----<u>건축물 및 주택</u>----- ----- ----- -----.</p> <p>1. <u>건축물 및 주택</u> ----- 2. <u>건축물 및 주택</u> ----- ----- 3. <u>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u> 4. <u>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u> 5. <u>건축물 및 주택</u> ----- ----- 6. <u>건축물 및 주택</u> ----- -----</p> <p>② (현행과 같음) ③-----<u>법 제194조</u>----- ----- -----.</p> <p>④----- ----- -----</p>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234조의 21</u>의 규정에 의한 <u>종합토지세</u>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 ----- ----- -----<u>법 제194조</u> -----<u>재산세</u> ----- -----.</p>
<p>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 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u>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 ----- ----- ----- -----<u>재산세과세대장에</u>----- ----- -----.</p>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7
----------	---------

제출일자	2005. 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함.(안 제14조)
-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규정함.(안 제28조)

개정근거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공포)
- 행정자치부 세제과-1696(2005. 1. 25)
- 경상남도 세제과-811(2005. 1. 28)호의 표준안에 의함.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감면조례”를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17조,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5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 및 제2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 제2항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호 및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7조 제명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로 하고,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를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로 한다.

제19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7조 제명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9조의2 제명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으로 하고,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광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며,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9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22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23조 및 동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4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6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7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법」----- ----- ----- ----- ----- -----</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상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 ----- ----- 재산세 ----- ----- ----- 재산세 ----- -----</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주택 ----- ----- ----- 재산세 ----- -----</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재산세 ----- -----</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 재산세 -----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제12조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제234조의16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u>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2. <u>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면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 한다.</u></p> <p>3. <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은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3</u>을 적용한다.</p> <p>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p>	<p>----- ----- -----<u>1,000분의 1.5</u>를----- 제1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u>----- ----- 제15조의3(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u>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 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수입금액} \times 365}{\text{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 ----- ----- -----.</p>
<p>제29조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제29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 -----.</p>